

법령 I -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

비상대비자원 관리법(시행령 포함)

문 1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안을 작성하고 국무총리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② 집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③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시·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④ 실시계획 중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문 2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㉠ ~ 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행정안전부장관은 (㉠)을/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한다.
- (㉡)은/는 5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(㉢)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(㉣)은/는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| ㉠ | ㉡ | ㉢ | ㉣ |
|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① 국무총리 | 국무총리 | 대통령 | 행정안전부장관 |
| ② 국무총리 | 행정안전부장관 | 국무총리 | 행정안전부장관 |
| ③ 대통령 | 행정안전부장관 | 국무총리 | 국무총리 |
| ④ 대통령 | 국무총리 | 대통령 | 국무총리 |

문 3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·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- ②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
- ③ 「전파법」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
- ④ 「소방기본법」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

문 4. 다음 사례에서 ㉠ ~ ㉣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2020. 11. 1. A 특별시에 적이 침투·도발하여 단기간 내에는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·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가 발생하였다. A 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은 A 특별시장 甲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였고, 2020. 11. 3. 甲은 A 특별시에 을중사태의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였다. 이후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해당 사태가 B 광역시까지 확대되자, ㉠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였다. 이에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. 11. 6. A 특별시와 B 광역시에 을중사태의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였다.

소관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甲은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라 판단하여,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 乙과 중점관리대상물자(의약품 및 의료기기)의 소유자인 丙에게 2020. 11. 10. 각각 협력을 요청하였다. ㉡ 乙에게는 구두로 참여 협력을 요청하였으며, ㉢ 丙에게는 문서로 사용 협력을 요청하였다. 이들에게는 지정 당시 이미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의 동의를 문서로 받아둔 상태이다.

2020. 11. 20. 평상상태로 회복됨에 따라 국회는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요구하였고, 같은 날 대통령은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였다. ㉣ 甲은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,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丙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사용을 2020. 11. 29.까지 연장하였다.

- ① ㉠, ㉡
- ② ㉡, ㉢
- ③ ㉡, ㉣
- ④ ㉢, ㉣

문 5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㉠ ~ ㉣에 해당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(㉠)은/는 주무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 교육을 할 수 있다.
-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 명령은 (㉡)이/가 그 훈련의 방법·기간 등에 대하여 (㉢)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.
- (㉣)은/는 동시관리훈련 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.

- ① ㉠은/는 5년마다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,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㉡은/는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·인수하게 하여야 한다.
- ③ ㉢은/는 정부연습의 실시에 관한 승인권을 갖는다.
- ④ ㉣은/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.

문 6.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상 다른 훈련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에 따른 훈련은 인력자원대상자에 대한 「병역법」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에 우선한다.
- ②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.
- ③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에 따른 인력자원에 대한 훈련은 「예비군법」에 따른 예비군의 훈련에 우선한다.
- ④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「예비군법」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.

문 7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실시와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.
- ㄴ. 시험제품 생산훈련의 경우 훈련의 기간은 연(年) 7일을 초과할 수 없다.
- ㄷ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하나,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.
- ㄹ.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및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면제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ㄷ, ㄹ
- ③ ㄱ, ㄴ, ㄷ
- ④ ㄱ, ㄴ, ㄷ, ㄹ

문 8.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」상 정부연습 및 자체연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되며,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- ② 주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·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·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.
- ④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·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,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.

문 9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인력인 甲은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보상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甲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,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본다.
- ②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甲이 의료지원을 받게 하여야 하며, 이때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.
- ③ 甲이 완치 후 퇴원 수속 중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, 그 유족은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재해보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한다.
- ④ 甲은 훈련기간이 1일을 초과하고 동시관리훈련이 아닌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 식비·숙박료·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다.

민방위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10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ㄴ.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기본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협의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ㄷ.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
- ㄹ. 시·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·도계획을 작성하여 시·도협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,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ㄷ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, ㄹ
- ④ ㄱ, ㄴ, ㄷ, ㄹ